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161	백혜련의원 등 17인	2024.06.05.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2	409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06.12.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3	1771	박지원의원 등 10인	2024.07.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4	2809	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08.1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06.)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5	10012	박지원의원 등 12인	2025.04.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6	15744	김한규의원 등 15인	2025.12.3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2. 3.)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2. 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

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제2항 중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配偶者”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

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姊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생략) ② 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망한 사람의 배우자</u>----- ----- -----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u>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u> <u>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u>상속인이 될 사람이</u>----- ----- -----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

-----.

1. -----부양의무

2. -----
-----직계혈족-----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동상속인은-----

-----.

1. -----부양의무

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생략)

④ ~ ⑧ (생략)

第1008條(特別受益者의 相續分)
共同相續人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 <단서 신설>

第1010條(代襲相續分) ① 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 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第1008條(特別受益者の 相續分) -

----- 다
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
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
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
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

<u>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の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u>	<u>속분에 의한다.</u>
<u>第1115條(遺留分の 保全) ① 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の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に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u>	<u>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